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클래스 신설	가입 자격	모 운용역 변경	결산	변동성	변경사항
1	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	○	-	-	-	-	7), 8)
2	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-	-	-	-
3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4	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-	-	-
5	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
6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7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8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9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10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11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○	-	-
12	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13	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	-	-	-
14	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○	○	-
15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(USD)(주식-재간접형)	-	-	-	○	○	6), 9)
16	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-	○	-	6), 8), 9)
17	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	-
18	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○	○	6), 8), 9)
19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호(주식)	-	-	-	○	○	6), 9)
20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4호(주식)	-	-	-	○	○	9)
21	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-	-	-	9)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가입자격 변경
- 3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10월 14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아래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37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[2022.10.14] [아래 참조 1]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	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 가격 적용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종류 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
종류 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
----------	---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	환매 수수료
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종류 C-P2	0.58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종류 C-P2e	0.29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2) 가입자격 변경

클래스명	변경 전	변경 후
종류 F	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종전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	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종전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, <u>판매회사의 일임·자문 계좌(랩어카운트, Wrap Account)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u>

3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이규상(책임)</u> , 홍성범(부책임)	<u>최주훈(책임)</u> , 홍성범(부책임)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(%)	변경 후(%)
-----	------	------	---------	---------

	등급	등급		
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3	3	<u>12.24</u>	<u>13.35</u>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(USD)(주식-재간접형)	2	2	<u>21.5</u>	<u>23.45</u>
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55</u>	<u>7.44</u>
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6.59</u>	<u>16.62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2	2	<u>23.11</u>	<u>22.91</u>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2	2	<u>23.95</u>	<u>24.02</u>

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 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기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 시가)</p>

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 사항 없음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</u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</u>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최주훈 팀장

2) 주요 경력

(15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멀티전략투자부문

2. 운용현황(2022.9.30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스마트롱숏 50 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	2014-03-12	73,440
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2014-03-12	43,079
미래에셋스마트롱숏 70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04-16	25,907

3. 운용성과(2022.9.30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스마트롱숏 50 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	-0.40	1.02	-0.76	41.07
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-0.12	0.72	-0.25	30.17
미래에셋스마트롱숏 70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0.90	1.19	-1.98	56.38